

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계 | 480,782,660 | 14,423,480 |
| 일반회계 | 463,952,604 | 13,918,578 |
| 특별회계 | 16,830,056 | 504,902 |
| 기타특별회계 | 16,830,056 | 504,902 |
| 상수도특별회계 | 3,323,266 | 99,698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1,009,338 | 30,28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97,659 | 20,930 |
|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| 3,317,628 | 99,529 |
| 주차장특별회계 | 67,660 | 2,030 |
|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6,196,904 | 185,907 |
| 하수도특별회계 | 2,217,601 | 66,528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859,3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4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첨 "기금운용계획"과 같다.

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